

요인(要人)의 안전을 위한 경호조직 분석 및 발전 방안

- The Current VIP Guard System and Its Development -

오 세 용 *

Oh Sea Yong

김 창 은 **

Kim Chang Eun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re are diverse sorts of VIPs including a king and individuals. Some like a king or president are in need of professional secret services, and others become VIPs by being guarded by a bodyguard company at their own request. The former is called a public guard, and the latter is a private one. In the field of the public guard, the nation should be furnished with a guard system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circumstances to protect VIPs. That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presidential system call for a different guard system, and the guard system's professional features vary to some degree with political situations and cultural climate. If the ultimate goal of guard is to protect the chief of the democratic and open state in a most efficient and safe manner, it's mandatorily necessary to set up a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guard organization to provide democratic and efficient secret services. It's desired that the domestic presidential guard division should be staffed with not only expert guards but other personnels dispatched from the military and police. In the police, guard mission is splitted among various guard and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bureau o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division, 101 security unit, mobile police and 22 special guard division. As a chain of command is separated and it's difficult to manage such organizations effective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exclusively in charge of VIP guard and security. In the area of private guard, the private police system has

* 영동대학교 경찰무도학과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shared national security task as a middle organization between the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ut now its intent has gradually weakened, and its mission should be redefined.

In addition, the way people look at private guard should change, and they should be well informed that it could serve to prevent possible crimes, protect them against crimes and get rid of their inconveniences.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people, the guard associations and businesses should put their efforts into reinforcing publicity activities, and the government, academic circles and press should team up with them as well.

Key-word : VIP Guard System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목적

고도화된 산업 구조의 발달과 현대화된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또는 가정과 사회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 없이는 쾌적한 생활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근래에는 잔혹한 살인 사건의 증가, 대규모 화재 사건, 미국의 911테러 등 실로 생활전반에 걸친 위기, 불안심리 등 위협요인이 그 어느 때 보다 가중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전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병리현상 및 범죄의 증가,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폭력화, 조직화로 인해 시민들은 범죄의 예방과 통제를 국가차원의 경찰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국민 스스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인 또는 국가의 주요직에 있는 인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요인들을 관리하는데 여러 직책의 요인 중에 국가적인 중대 의사결정권을 가진 요인은 국가 체제유지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호조직이 필요하다. 모든 기업 또는 조직체 나아가서 테러나 위해(危害)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위협요소가 작용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호조직 체제는 국가 또는 특정 조직체를 상대로 반대하는 단체 또는 조직체에서 의사표현의 수준이 때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수준은 상대방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주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가 되는 테러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위기 발생 시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나, 단체, 회사의 정책을 담당하는 임원 또는 대중스타를 '요인(要人)'으로 정의하고 요인을 위협하는 위해자의 특성 및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외국의 공경호¹⁾조직과 민간 경호²⁾조직을 분석 후

국내 경호조직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요인 경호조직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본 논문이 제시하는 요인경호조직은 경호체계가 국가나 단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번역문헌, 연구논문, 국방, 경찰백서 및 언론보도내용과 각 분야의 위기관리 지침 등 위기관리에 관계되는 각종 법률과 경호관련 연구논문, 자료 등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의 범위는 국가원수로부터 경호가 필요한 정부수반과 회사 단체의 수장들 그리고 경호 의뢰인까지 범위를 정하였다.

둘째, 외국 공 경호제도를 분석하는 국가로는 4개국으로 하고 민간경호는 2개국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셋째, 연구의 특성상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된 테러 및 경호자료는 제외하였으며 철저하게 공개된 것만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위해 행위의 발생 원인

위해행위의 발생 원인은 첫째 사상적 원인, 둘째 정치적 원인, 셋째 사회적 원인, 넷째 심리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상적 원인은 구소련의 붕괴와 동서간의 내전으로 극좌 테러단체들의 요인에 대해 위해 행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사회구조의 다양화, 복잡화 양상에 따라 개인적 요구사항도 있으나 대부분 테러³⁾는 세력과시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1) 공경호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 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 또는 재해 및 혼란 등에 의하여 공안을 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정부 요인, 국내외 주요인사 등 신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여러 가지 위해(危害)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신변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Private Security)을 말한다.

3) 프라츠 파농의 이론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The Wretched of the Earth)에서 폭력으로서의 폭력은 그것이 실제로 혁명으로 변한다는 문제와는 무관하더라도 독자적인

무기가 된다.

정치적 원인은 정치적 목적하에 개인이나 단체가 요인에 대해 가하는 위해로 정적제거, 장기집권 및 권력의 집중화로 인해 요인에 대한 위해(危害)가 일어나며 요인테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 원인에 대해 Merton는 사회의 불균형과 일탈 행위를 보이는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아노미 사회의 행동 양식을 다음 <표-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표-1> 아노미 사회의 행동양식과 이론의 근간

+ : 성공 욕구, 수단 유(有), - : 성공욕구, 수단 무(無)

구분	성공욕구	성공수단	행동양식
성공욕구와 성공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	+	순응(順應)
성공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약한 사람	-	+	수법(垂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합법적 수단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	+	-	혁신(革新)
성공욕구도 약하고 성공수단도 없는 사람	-	-	퇴행(退行)
성공욕구와 수단에 상관없이 군중집회나 혁명모의와 같은 반항(Rebellion)을 보이는 사람	±	±	반란(叛亂)

2.2. 위협 요소 분석

2.2.1. 위협요소 분석 대상

경호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호대상자가 어떻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⁴⁾

첫째, 경호대상자의 배경에서부터 위협을 관찰해야 하는데 위협의 형태는 경호대상자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 즉, 영화배우, 가수, 정치가들은 호의적인 사람, 사진촬영자, 팬 등의 궁중에 많이 노출되는데 통상 이들에 의한 악의에 의한 공격보다는 무질서한 접근행동에 의해 부상당하기 쉽고 확률은 낮지만 분노에 의한 극단적인 공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경호대상자의 생활방식이나 습관이 공격자의 종류를 결정하지는 않으나 공격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즉, 불평등의 시정방안으로서 폭력을 강조하고 폭력은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방법 뿐만 아니라 피지배 계층의 열등의식을 해소시키는 정치세력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Burt Rapp 외 1, ibid, p.9.

회를 조성할 수 있는 취약약성을 내포할 가능성은 많다.

예를 들어 가수나 정치지도자는 지명도를 위해 대중 앞에 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호대상자의 반복적인 생활습관 등은 공격자들에게 공격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부적인 위협요소로는 사람, 물질, 지형적인 위협요소가 있고 대상별 위협요소는 <표-2>와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2.2.2. 유형별 특성

테러범들은 광인형, 전문적 범죄형, 순교형, 정치형 등 크게 네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각각 특성이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범들이 위와 같은 유형으로 뚜렷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이 혼합되어 그 특성이 복잡하게 얹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

2.3. 공 경호조직 분석

2.3.1. 국외 경호조직 분석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테러와 암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조직은 공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1) 미국의 경호조직

미국의 정부형태는 연방공화제로 대통령중심제이며, 정부는 헌법 아래 대통령과 행정 각부, 상원과 하원, 사법체계로 구성된다.⁶⁾ 미국의 경찰은 지방경찰을 위주로 하고 그 위에 주경찰(state police), 연방법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을 쌓아 올려서 성립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경찰은 자치제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⁷⁾ 더구나 우리의 경찰청 경비과와 같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가 없는 점이 특색이다.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경찰은 다시 자치제인 도시 및 군경찰이 2대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지역법집행기관으로서 치안관, 특별지구경찰(특별구의 경찰, 대학경찰, 공원경찰)이 있다.

5 최성규, “테러리스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24~30면.

6 Harold K. Becker, Handbook of the World's Police (New Tersey :Scarecrow Press Inc., 1986), pp.312~313

7 Samuel Walker,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3), pp.30~35.

〈표-2〉 대상별 위협요소분석

위해요소	특징	위험분석
적대적인 단체와 조직 (Hostile Groups &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성스러운 군대 조직과 유사 ▶ 강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계획 및 시설 확보 ▶ 목숨을 포기 할 수 있는 테러범 양성 ▶ 각종 첨단 장비 및 고성능 폭약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공격, 폭파, 암살, 납치 ▷ 반정부 투쟁, 분리 독립, 보복 과시 등 가양한 목적으로 위해(危害) ▷ 정치인, 민간인, 외교관, 정부 관리 등 위해(危害)
개인적인 암살범 (Individual Assass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을 가진 고용인 또는 복수심에 불타는 해고자 ▶ 범행 전에 의기소침한 고립 생활자, 위협적인 행동, 약물 및 알콜 남용, 편집증 증세 및 표출 ▶ 첨단 장비 및 지원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범행을 준비하는 관계로 실행 전까지 탐지 곤란함으로 경호대상자 접근시 부상 및 피살 우려
납치범 (Kidnapp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값이나 이권요구 수단으로 경호대상자나 가족, 동료납치 ▶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범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범의 목적 달성시 부상 및 피살 가능
비우호적 군중 (Unfriendly Crow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가지 형태 및 규모로 숙소 및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 ▶ 평상시 인기 없는 경호대상자는 시위대 돌파 위한 경호 소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격한 군중에 의한 시위 유도 시 경호대상자 고립 및 신체적인 부상 가능
정신질환자 (Psych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행동 표출 ▶ 위험성 예측이 매우 어려움 ▶ 전문적 치료요구로 방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위해정도는 낮으나 주변 환경에 따라 우발적인 직·간접 위해 행위 가능
장난꾸러기와 성가신 사람들 (Pranksters & Nuis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함이나 계란 던짐 ▶ 불시에 사생활 방해 ▶ 뉴스를 만들기 위해 따라다님(paparazzo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위험은 적더라도 이들이 지나친 행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특정 인물들 (Special Individu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작가, 극성스런 군중 ▶ 불순한 행동을 하지 않으나 경호 대상자 접촉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의 행동으로 경호 방어망이 붕괴 될 수 있고 혼란 스러운 분위기를 공격자가 이용 가능
군중 (Crow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의적이고 열광적인 행동 표출¹⁾ ▶ 쉽게 흥분하고 무질서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호대상자 접근시 팬들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부상 가능

①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설립

미국의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에는 비밀경호국이 있다. 이는 1865년에 창설된 미국 연방 최초의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이자 수사기관(Bureau of Investigation)으로서 연방정부의 화폐, 지폐, 공채, 연방정부발행 유가증권 등의 위조, 대통령과 그 가족 및 후보자의 경호를 담당하는 재무성 소속의 경찰기관이다.⁸⁾

SS(Secret Service)는 1865년 발족한 이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수많은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권한을 점차로 확대하여 왔다. 이렇게 해서 요인의 경호와 위조통화의 단속이라는 별개의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② 대통령 및 요인의 경호

SS는 다음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경호업무를 법률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 및 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과 차기 부통령과 그 직계가족, 전직대통령과 그 부인 및 자녀, 미국을 방문중인 외국 원수 및 정무의 장,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자. 특정용무를 위해 외국을 방문중인 미국정부의 사절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자 등이다.⁹⁾

③ 백악관(White House)과 외국대사관의 경비

SS의 정복경찰부¹⁰⁾의 임무는 백악관과 기타 대통령이 집무하는 장소, 부통령관저의 경비 및

워싱턴 시내에 있는 각국 대사관 시설의 보호를 임무로 한다.

④ 비밀경호국의 조직

Secret Service은 발족 이래로 꾸준하게 재무성 산하의 기관¹¹⁾으로서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겠으나 미국에서는 법무성 이외의 재무성에도 상당한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재무성 산하에는 Secret Service 이외의 알콜 및 마약, 화기 단속국(ATF)과 관세청(Customs Service)이 있어 재무성에서는 이들 기관을 통합하고 각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며, 또한 기관의 수사관에 대한 훈련, 기획의 조정을 위해서 재무장과 아래 법집행 담당 장관보를 두고 있다.

(2) 영국의 경찰경호시스템 현황

영국은 입헌군주국으로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왕인 엘리자베스여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적 역할만을 하고 실질적 국정수행은 수상이 이끄는 내각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의회에 있어서의 국왕이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정통의 상징임과 동시에 사법권의 원천이며 군통수권자이고 영국 국교의 옹호자이다.

8 치안본부 치안기획관실연구발전과, 「미국경찰」, 치안본부, 1988,p.6

9 미국비밀경호대 홈페이지(<http://www.treas.gov>) 내용 참조.

10 정복부서(Uniform Division)는 우리의 101경비단에 해당하며, 현재 2,100여명에 이르는 정복요원들은 백악관 및 부통령의 관저와 외국 대사관의 경비를 맡고 있다.(권지관, "미국경찰의 경호, 그 허와 실", 수사연구 2001년4월호, p.105).

11 재무성 경찰기관으로는 이외에 국내수입국정보부(Bureau of Internal Revenue, Intelligence), 국내수입국 주정부 집행과(Alcohol Tax Unit Enforcement Div), 마파(Bureau of the Custom, Custom Agency Service)등이 있다(김두현, 전계서, p.129)

① 영국경찰의 조직 및 임무

영국의 경찰제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에 43개의 경찰대가 있으며, 북아일랜드에는 북아일랜드 경찰이, 스코틀랜드에는 8개의 지방경찰대가 있다. 이 모든 경찰대의 공통적 관리 시스템은 3자 공동관리체제인 내무성장관, 경찰관리기관 경찰장에 의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¹²⁾

② 왕실 및 수상경호

국왕과 수상의 경호는 런던경시청이 담당하고 있다. 런던경시청은 중앙경찰로서, 경찰총감이 런던경시청장을 겸임하고 있어 전국경찰의 지휘, 조정과 동시에 런던지역의 경찰임무를 수행하며, 왕실과 수상경호의 임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③ 국빈경호

외국원수 등이 영국을 방문하여 오는 경우는 국빈으로 내방하는 경우와 공무 또는 사무로 오는 경우가 있다. 국빈 또는 공무로 내방하는 것이 결정되면 관계기관들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경찰에서 국민 중 반대동향의 유무를 검사, 경호상 주의를 요하는 정치적 광신자나 정신이상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한다. 이에 따라 공항입구의 이민관은 리스트의 인물동향을 주시함과 동시에 특히 위험인물들은 국빈 등의 체류기간 중 철저히 미행, 감시한다. 영국 경호는 사전예방경호, 분권화 및 책임제경호의 특징이 있다.

(3) 일본의 경찰경호 시스템 현황

일본은 입헌군주제에 의한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갖추고 있다. 국가원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일本国의 상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천황이 사실상의 국가 원수이다. 천황은 정치문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중립을 지키고 있다. 단 국사에 관하여 법률, 정령, 조약의 공포, 국회소집, 총선거 시행공고, 내각총리대신 임명, 국무 대신 임명 인증, 사면인증, 영전수여, 비준서 인증, 외교사절 신임장 봉정 등의 형식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① 일본경찰의 경호제도

일본의 경호기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경호기관 권력집중화를 우려하는 정부의 생각과 일본 경찰기관의 조직의 방대함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일본에서는 경호작용을 경호와 경위로 구분하고 있다. 경호는 정부요인이나 외국요인에 대한 신변보호로서 경찰청에 담당하고, 경위는 일본천왕이나 황족에 대한 보호 작용으로서 경찰청 직속의 황궁경찰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12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2, p.84

② 경찰청 경비국(警察廳 警備局)

경찰청의 경비공안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비국이며 그 하부조직으로 공안제1과·공안제2과·공안제3과·경비과·외사제1과·외사제2과를 두고 있다.¹³⁾

③ 동경도 경시청(東京都 警視廳)

도(都)·도(道)·부(府)·현(懸) 경찰 중 경시청은 경비부·공안부로 나누어지고 도(都)·도(道)·부(府)·현(懸) 경찰은 경비부로 통합되어 있다.

경시청에는 경비부에 경비제1과·경비제2과·재해대책과·경위과·경호과와 제1~9기 동대·특과차량대가 있고, 공안부에 공안총무과·공안제1과·공안제2과·공안제3과·공안제4과·외사제1과·외사제2과가 조직되어 있다. 이중 공안제1과는 경호 첨보수집·위해인물 동향파악, 공안제3과(경호과)는 요인경호대(SP : Security Police)로서 경호계획 수립 및 근접경호를, 외사제2과는 외국인 동향감시(조총련, 아시아계), 경비제1과는 주요시설, 행사장 외곽경비를 각각 관정한다.¹⁴⁾

④ 황궁경찰본부(皇宮警察本部)

황궁경찰본부는 경찰청의 부속기관으로서 황궁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황·황후 및 황태자 기타 황족의 호위, 황궁 및 황족이 머무는 곳의 경비, 기타 황궁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황궁경찰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이 행하는 사무로 정하여져 있으나 그 실시기관으로서 황궁경찰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4) 프랑스 경호시스템

프랑스는 의회주의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¹⁵⁾ 즉,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7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한다. 이에 걸맞은 프랑스의 경찰체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형태로 내무부 장관 지휘하에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이 이를 받치고 있는 형태다. 또한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있으면서도 전국적인 제2의 국가경찰로서 일반경찰업무도 집행하는 현병(Gendarmerie)이 있으며 이들 두 기관에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호체계는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청장이 관장하고 있다.

13) 이중 공안제1·3과는 경호정보 수집·분석·평가를, 공안제2과는 ①수상 및 요인경호에 대한 지휘·조정·감독·연락·협조 업무 유지, ②안전대책 작용, ③극좌파, 폭력단 동향감시, ④국빈경호의 업무협조는 외사제1·2과에서 실시하고 일반외사작용은 조총련계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14) 경시청의 경호대상은 ①내각총리대신 및 국빈, ②중·참 양원의장, 최고재판소장, 국무대신, ③외교사절단의 장, ④내각 관방장관, ⑤정당 고위간부 및 경찰청장관이 지정하는 자이다(김두현, 전계서, p.168)

15) 국가정보원, 2000, 세계각국편람, 342면

① 임무

대통령근접경호를 담당하는 내무부경찰청내 경호국(V.O)과 대통령궁 및 별장등 숙소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가경비대(National Gendarmerie) 산하 공화국경비대(La Garde Republicaine)로 크게 구분하여 각각 임무에 임하고 있다.¹⁶⁾ 경찰경호국(V.O)의 경우 대통령 및 수상, 3부요인, 장관, 전직요인, 외빈 등의 경호와 계획을 주로 담당하고 국가현병대 공화국경비대(GSPR)는 파리관할 제1지역군사령부 직할대대로서 대통령 등 요인을 경호하고 중요시설의 경비, 국가의전행사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GSPR내 경호관련 부로서 대통령경비대(GIGN), 안전관리대(GS), 오토바이부대, 경찰청경호국(V.O), 파견대, 군악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② 운용

프랑스의 경우 경호와관련된 업무는 경찰청경호국(V.O)에서 전반적으로 계획 및 총괄을 하고 최근접경호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화국경비대의 직접적인 경호지원을 받아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화국경비대내에 현병군으로 구성된 대통령경비대는 대통령관저(엘리제궁) 및 영빈관내곽경비를 담당하며 안전관리대는 영부인경호, 엘리제궁의 출입자에 대한 통제 궁 내외 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며 그 외 오토바이부대와 기마부대 등은 행사시 교통통제와 주로 의전행사에 주로 운용되고 있다.

2.3.2. 국내 경호조직

(1) 대통령경호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호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대통령경호실(Presidential Security Service)이다.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기 위하여 외관경호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청와대 내부와 출입구는 22특경대가 맡고 있으며 그 외관은 101경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접경호에는 경찰의 경우 사복과 정복조로 나뉘어서 교대로 경호에 임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원은 국가보위 차원에서 제정된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거 국가보위의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정보·보안·안전활동을 통해 사전 제거·제압하고 근접경호를 통해 직접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⁷⁾

(2) 경찰청 경비국(警察廳 警備局)

국무총리 등 주요요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청 경비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비국은 경비1과, 경비2과, 경호과¹⁸⁾를 두고 있는데 경호과는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요

16) 파리경찰청 관리 하에 공화국경비대가 설치되어있는바, 이들은 약 3천명의 병력으로 1개의 보병연대와 1개의 기병연대로 편성되어있으며, 이들은 국가 중요행사시에 호위임무를 수행한다.

(정진환. 1993,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비교경찰제도 278~279면)

17)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http://www.pss.go.kr>) 내용참조.

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등 경호에 대한 주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비부, 101경비단, 기동단, 22특별경호대, 국회경비대, 정부 세종로청사경비대, 인천국제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202경비대대 등 경찰관련기관을 두고 있는데, 경비부는 다시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설치하고 있다. 경비1과는 주로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일반경비, 다중경비, 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비2과는 경찰작전비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도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광역시 및 도의 지방경찰청에도 경비과 또는 경비교통과를 설치하여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지도,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다¹⁹⁾

경찰은 국무총리 이외에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7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실시한다.

2.4. 민간경호 조직분석

2.4.1. 국외 민간경호조직

(1) 미국경호산업의 현황

미국의 사설경찰활동의 시작은 17·8세기 무렵 영국에서 이주, 신 개척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활동하던 야간감시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초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과 19세기 중엽의 캘리포니아 서부개척시대에 금광의 개발로 금괴수송을 위하여 발달한 동·서간의 철도경비와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설탐정기관²⁰⁾과 같은 사설 경찰기관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경호산업은 수 백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사회 및 삶의 방식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²¹⁾ 앞으로도 지속

18 경호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http://www.police.go.kr>)

- 가. 경호경비계획수립
- 나.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 다.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 라.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운용
- 마.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 바.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19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 제13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의 내용임.

20 1850년 Pinkerton 사설홍신소는 당시 9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남북전쟁 당시 남군이 북군의 경제교란작전으로 대량의 위조화폐를 발행하자, 이를 적발하기 위하여 Pinkerton 홍신소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다가 전후 (Secret Service)로서 연방정부의 공식기관이 되었다.

21 미국은 이미 1972년에 연방정부집행원조국 산하 민간경비의 사회안전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민간경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75년에는 형사사법의 기준과 목표에 관한 전국자문위원회 위원장이 PSTF/Private Security Task Forces) 보고서 서문에 “이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경비의 영향이 미치지 않

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19세기 중엽부터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사설 경호관련 분야가 많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경호산업은 20세기 최고 산업의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고용과 예산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경찰의 그것을 훨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 또한 개인의 생명, 재산 그리고 신체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사설 경호분야의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범죄발생건수와 피해액의 엄청난 증가와 더불어 경찰조직은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지만, 미국 통계조사국이 대통령 민간경비 국가 자문위원회 전체 경찰인력으로서는 이 모든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도처에서 범람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경호산업분야에 기계경호산업 분야를 합한 총 경호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문화 시대를 개척하게 되었다.

(2) 일본의 민간경호산업의 현황

일본의 사설경찰제도는 중세기부터 사적으로 실시되었다. 한 예로 석정진의 “일본 역사” 중세 무사편에는 11세기 말부터 12세기 초에 강호(현재:동경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성주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지방 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해 영주들을 대심사로 편성하여 1개월에 10일씩 상경하여 숙직, 경호, 잡역의 봉사를 행하게 하였다고 기록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특정계층에 의하여 실시되어 오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적 사설 경호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호업체의 출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1962년 7월에 발족한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로 현재 일본 제1의 경호업체인 SECOM의 전신이다.

그 동안 일본사회에 있어서 경호산업의 경제성장은 범죄 발생율과 함께 발전을 해왔다. 이제 일본의 경호산업은 국내에서 국외로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호산업이 전문적인 산업으로 출발한 50년대 말 또는 60년대 초로부터 약 40여 년이라는 미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²²⁾ 급속한 경제성장과 전자기술의 발전을 경호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전후 일본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여 1980년대 초 한국에도 진출하였으며, 1988년에는 중국 본토에까지 진출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4.2. 국내 민간경호조직

(1) 경비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 경비산업의 발전과정은 대체적으로 1960년대를 기준으로 전통적 의미의 경

는 곳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할 만큼 민간경비가 미국사회 형사사법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 일본 경비업법은 1972년에 제정되었고, 1982년에 개정되었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정 시기만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보다(1976년 제정) 약 3년 빠르게 제정되었다.

비제도와 현대적 의미의 경비제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²³⁾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현대적 의미의 실질적 경비업체가 출현하게 되는데 미8군 부대의 경비를 담당한 화영기업과 경원기업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2) 현황

1993년도 대전에서 열린 EXPO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1985년 55개 업체에서 1996년 1,020개 업체로 증가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1997년 1월 1일부로 외국자본의 완전개방과 1997년 말의 IMF의 외환위기로 국내경제가 어려운 과정 속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들어서 134개 업체가 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비산업 분야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표현이며, 이에 반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비산업은 외국자본의 유입과 기술의 유입,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발전만큼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80년대에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²⁴⁾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국자본의 완전개방으로 우리나라의 경비산업은 제1의 위기를 맞기 시작했으며, 이어진 국가초유의 IMF 사태에 직면, 제2의 위기 속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 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수요의 변화는 미국 및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비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 오늘날에는 범죄예방은 경비산업이 담당하고 범죄수사 및 범인체포는 경찰이 전담하는 형식의 이원적 구조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⁵⁾

23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현대적 의미의 경호제도의 구분을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이 시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민간기업이 출현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4 1980년 한국 최대의 기계경비회사인 에스원(S1)이 일본 SECOM사와 합작하면서 외국 경비기술의 국내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1981년에는 범아종합경비가 일본 종합경비보장회사와, 대한중앙경비보장은 일본 Central사와 기술제휴를 하여 많은 발전을 하여 왔고, 1998년 말에는 한국보안공사가 미국 TICO사와 업무 및 기술제휴를 하였다. 이 외에도 한·불 에너지가 프랑스회사와 업무제휴를 하는 등 1999년 현재 국내5개 업체가 외국회사와 업무 및 기술제휴를 하고 있다.

25 현재 미국경찰의 업무 중 약 20%만이 범죄와 관련된 업무이고 나머지 80%는 경찰 보조적 업무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 보조적 업무가 민간경비업무 영역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주 정부예산은 계속적으로 긴축되어 경찰인력과 장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3. 요인 경호조직의 발전 방안

3.1. 정치체제와 경호조직 체계

정치체제 형태가 내각 책임제 혹은 대통령중심제인가에 따라 경찰경호체제가 다르며 각국의 정치상황과 문화풍토에 따라 경호체제의 전문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는 국가 중요요인의 경호관리가 이루어지는 부처, 경찰, 군, 경찰군 혹은 독립된 경호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영국, 일본은 내각 책임제인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적 존재이며 수상이 현실정치의 최고지도자이므로 경호의 주력은 수상에 집중된다, 아울러 이들 국왕과 수상의 경호는 전부 전통있는 치안기관인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²⁶⁾ 주요국가의 경호 조직 체계는 <표-3>과 같다.

<표-3> 주요국가의 경호조직 체계

국가	경호대상	경호기관	경호책임자	인원	협조기관
영국	여왕, 수상	경시청 특수부경호국	경호국장(부총감보), 경호처장(총경)	410명(근접 경호 6명 상주)	지방경찰청
캐나다	총독수상	경시청 수사부경호국	경호국장(수사부장, 경시차감, 경호국장)	200명(근접경호 12명 상주)	지방경찰청
일본	황실, 수상	경시청 경비국 공안2과(경호과)	경호과장(경무관)	170명	지방경찰청
말레이지아	국왕, 수상	경시청 경호과	경호과장(총경, 경무관)	101명	지방경찰청
독일	대통령, 수상	내무성 범죄 수사국	국장(치안차감)	536명	
스페인	국왕, 수상	경호실 안정성 안정국	실장(중령) 안정국장	376명	군
이탈리아	대통령, 수상	경호실	경찰차감	150명	경찰, 군
필리핀	대통령, 부통령	경호사령부	군경찰 사령관(중장, 정보부장 겸임)	2500명	군
태국	국왕, 수상	보안사령부 경호대	경호대장(대령)	300명	경찰
프랑스	대통령, 총리	경호실	실장(차관보) 경찰총장 또는 중장급	400명	경찰
미국	대통령, 부통령	경호실	실장(차관보)	210명	군, 경찰
자유중국	총통	총통	실장(중장)	20명(근접경호)	현병사령부

미국과 한국은 모두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지원을 받는 독립된 경호조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경호실 관리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적, 개방적인 국가원수의 행동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있다고 본다면 민주적 · 효율적 경호의

26 같은 입헌군주제인 스페인과 태국은 국내 정치상황에 의해 군과 경찰의 혼성조직, 내지는 군에 의해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인 국왕의 경호는 군이 담당하며 태국은 국왕의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고 수상의 경호는 군에서 담당하고 있다(최평길, "국가원수 경호관리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1,p.23.)

기본요건은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경호조직 체제의 확립이다.

따라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경호관리체제는 각국마다 정치체제와 정치풍토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호조직의 체계에 있어서 경호조직이 경찰에 의해서 운영될 경우의 형태는 각국 수도 경시청과 지방경찰의 수사부, 공안국의 경호국 혹은 경호과에서 담당하며 책임자는 경호국장, 경호과장, 경호대장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직급은 경찰차감에서 충경급이다.²⁷⁾

경호실이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될 경우는 실장은 장성급 내지 차관급으로 운영된다.

3.2. 경호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경호조직은 인위적인 범죄나 자연적인 재해사태를 예방하고 진압함으로써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는 반드시 잘 정비된 조직과 그 구성원 이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과 60만 대군의 유지 및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해야 하므로 각국의 경호실태를 고려, 현재와 같이 독립된 경호실 체제를 갖추고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화 같은 연유로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내요인(갑, 을, 병호) 및 외반(1, 2, 3, 4등급)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단 갑호 및 외빈 1, 2등급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하되, 함께 협조하여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경호실은 국가 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과는 대통령 등 갑호 및 외빈 1, 2등급 경호대상의 경호업무에 대하여 협조관계에 있다.²⁸⁾

그러나 경찰의 국내외 주요요인에 대한 경호대상분류를 단순하게 요인의 지위에 따라 구분하는 현 규정을 요인경호와 관련한 정보 및 첨보, 위해요소, 국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비하여야 한다.

27 한편 경호실에 군과 경찰의 혼성조직으로 운영될 때는 군경찰이 담당하고 책임자의 직급은 높은 편으로 장성급이나 차감급이다. 또한 경호실 조직이 군의 독자적인 운영인 경우(태국)는 저읍와 보안을 담당하는 통합보안사령부의 경호대의 대령내지 준장급이 책임자로서 경호 책임을 진다.

28 경호행사시 행사장, 숙소 등에서 원활한 업무협조 및 연락,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경호CP,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비(경찰)CP가 있으며, 경호CP는 통상 CP장이 선발부 계장급이 위치하면서 경찰·군·관련기관 요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3.3. 민간 경호의 활성화 방안

민간경호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 시민, 그리고 민간경호원간에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민간경호를 공경호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안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상호 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민간경호업체 또한 지나친 영리추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일반인들은 범죄예방을 무조건 경찰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간경호서비스가 생활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고찰

테러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금번 '미국뉴욕의 세계무역센타 항공기 테러사건' 후의 미국정부의 조치 등은 보도를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다. 특히, '전쟁 선포에 따른 조처로 지휘체계가 이원화됐다. 부시대통령은 테러발생 10시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와 정상근무에 들어갔으나 딕 체니 부통령은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집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한다'는 미국 헌법에 준거한 테러 대비 경계조치라고 지적했다'²⁹⁾는 것은 위기관리에 대한 경호조직의 효과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요인(要人)은 국왕에서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형태이며 국왕이나 대통령 같이 전문 경호조직의 경호가 필요한 경우와 경호업체에 의뢰에 의해서 스스로 요인(要人)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공경호라 하며 후자를 민간경호라 한다.

공경호에서 요인(要人)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적 특성에 맞게 경호조직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내각 책임제 혹은 대통령 중심제인가에 따라 경호체제가 다르며 각국의 정치상황과 문화풍토에 따라 경호체제의 전문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경호실 관리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적, 개방적인 국가원수의 행동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있다고 본다면 민주적·효율적 경호의 기본요건은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경호조직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국내 대통령경호실내의 인원 편성은 독립된 경호 요원 외에 군, 경찰 등의 파견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기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며, 경찰의 경호업무가 경찰청 경비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비부, 101경비단, 기동단, 22특별경호대 등 경호·경비관련기관을 두고 있어 지휘체제의 이원화와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으로 요인경호·경비와 관련한 업무관장을 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민간경호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호의 중간적 입장으로 국가 보안적 임무를 수행하여 왔던 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 경찰 또는 민간경비와 함께 그 임무를 새로운 제도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경호의 부정적 이미지 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

식을 각종 활동을 통해 활발히 전개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협회와 경호업체 자체적인 홍보활동 및 정부, 학계 그리고 언론계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5. 참고 문 헌

- [1] 고강의, [정보의 이론과 실제], 이상학습, 1992
- [2] 국가정보원, [세계각국편람], 2000
- [3] 김두현, [경호경비법], 와이제이, 1996.
- [4]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9
- [5] 데니스 V.N. 맥카시, [대통령경호], 이성율 역, 1988.
- [6] 박상식, [국제정치학], 집문당, 1985.
- [7] 백종천, [한반도 위기관리사례와 평가], 인간사랑, 1992.
- [8] 송준만, [공격성에 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9] 이경재, [범죄학 입문], 길안사, 1996
- [10] 이상현, [범죄 심리학], 박영사, 1994
- [11] 이재훈, [편집증과 심리치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 [12] 이현수, [이상행동과 심리학], 대왕사, 1997
- [13] 정진환, [미국 경찰론], 양영각, 1994
- [14] 정태황, [경호개론], 도서출판 글힘, 1999
- [15] 정태황, [기계경비원론], 도서출판 쟁기, 1996
- [16] 조병오, [Security Management], 에스원, 1998
- [17]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8
- [18] 최명호, [세계의 정보기관들], 대왕사, 1989.
- [19] 최평길, [대통령학], 서울 박영사, 1998.
- [20] 강길훈, [민간경비 환경과 이론적 배경 고찰], 한국경호경비협회, 경호경비연구 제2집, 1998
- [21] 김 윤, [테러리즘과 그 법적 대응책], 치안연구소, 1995
- [22] 김두현, [경호학의 발달과 공경호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1998
- [23] 김평섭, [경호원의 기본기량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제1집, 1997
- [24] 양재열, [경호의 기본적 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25] 이성식,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1996

- [26]장동원,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1991
- [27]전영실, [각국의 범죄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28]조은경, [충동성과 공격성향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1997
- [29]조현지, [각국의 테러범죄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논문, 1995
- [30]Rap Burt and Lesce Tony, [Bodyguarding: A complete manual], Loompanics Enterprise Inc, 1995
- [31]MacCarthy Denis V. N. with Smith W, [Protecting the President], USSS, 1984
- [32]Youngblood RufusW, [20 Years in the Secret Service], USSS, 1981
- [33]Jonston Ron, [How to manage the risk of Personnal Protection], in New York, 1997
- [34]RAPP Burt &Lesce Tony, [Bodygurding - A Complete Manual], 1997
- [35]U. S. CID, [Protective Service], 1978
- [36]Ron, Jonson, [How to manage the risk of Presonal Protection], 1997

저자 소개

오 세 용 : 용인대 무도대학 격기과 학사, 명지대 예체능대학 체육학과 석사 명지대
산업시스템 공학과 박사과정, 현 영동대학 경찰무도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요인안전을 위한 경호조직

김 창 은 : 고려대학교 학사(산업공학과) TEXAS A&M 석사, 박사 (산업공학과)
현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정교수
관심분야 TPM, ERP, e-business, Six Sigma.